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91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 송갑석·문진석·박광온

서삼석 · 양정숙 · 이개호

이용빈 · 이장섭 · 이형석

인재근 • 전용기 • 조오섭

의원(12명)

제안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하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 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에 관한 절차·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안 제16조 제2항, 제67조의3제1항 및 제81조의3제1항)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보정서류의 제출기간이 만료되어 취하 간주되거나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해 무효 처분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적용함으로써 회복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출원 절차의 무효처분 또는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

나.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의 제출 생략(안 제52조제4항 신설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원출원)이 적법하게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분할출원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처리가 발생되고,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나 오인·혼동으로 인해 분할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누락한 경우

에는 분할출원이 자신의 원출원에 의해 거절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출원이 적법하게 우선권 주장 등을 한 경우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안 제52조제8항 및 제52조의2 신설, 제59조제 3항, 제62조제6호, 제92조의2제4항 및 제133조제1항제7호)

현행 분할출원은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의 기간까지만 가능하여 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의 심판을 청구하 면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할 출원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심판의 청구 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중 등록가능한 발명 이 있어도 구제가 불가하여 출원인의 특허획득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특허거절결정의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 특허법원 에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심사관이 특허거절결정의 대상 으로 삼지 않았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분리하여 출원 할 수 있 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고, 분리출원은 분리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리출원의 범 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기산일은 분리출원일로 함.

라.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출원의 대상 확대(안 제55

조제1항제2호 · 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특허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개량된 발명으로 출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특허결정된 경우라도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 주장출원의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함.

마. 재심사의 청구의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67조의2제1항ㆍ제3항)

특허결정 이후에는 청구범위의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좀 더 강력한 특허권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특허결정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재심사의 청구기간이 30일로 짧아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하는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 대상을 현행의 특허거절 결정된 특허출원에서 설정등록 전의 특허결정된 특허출원까지 확대하고,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분리출원을 재심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재심사의 청구가 가능함이 명확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바.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의 보호(안 제122조)

공유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타특허공유자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지분을 상실한 경우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로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을 받은 공유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한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사.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안 제132조의17,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53조제1항제1호)

현행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은 특허거절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짧아 심판청구인이 심판준비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 불필요한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제4항) 중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같은 조"를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 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 에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관하여 제54조제3항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 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 출된 것으로 본다.

⑧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 구항
 - 2. 선택적 기재사항 중 일부만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청구항
 -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다)에 관

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 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 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 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리출원은 그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없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분할출원이나"를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허 여부의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을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으로 하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경우 그 선출원에 대해서는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을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분할출원"을 "분할출원, 분리출원"으로 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을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로 한다.

제62조제6호 중 "분할출원인 경우"를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본문 중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거절결정"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으로 한다.

-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3. 그 특허출원이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인 경우

제67조의3제1항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81조의3제1항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92조의2제4항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할출원을 한 날"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중 "질권행사"를 "질권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허권자"를 "특허권자(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의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로 하며, "질권설정"을 "질권설정 또는 특허권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로 한다. 제132조의17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7호 중 "분할출원인 경우"를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제67조의3제1항 및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출원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제52조의2, 제59조제3항, 제62조제6호, 제92조의2제4항 및 제13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 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 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 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 허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6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 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 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7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 특허권이 분할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17, 제5 2조제1항제2호 및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생 략)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②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	
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이 <u>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u>	<u>정당한 사유</u>
<u>질 수 없는 사유</u> 에 의한 것으	
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	
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	제52조(분할출원) ①
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 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 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 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 1. (생략)
-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반 은 날부터 <u>30일(제15</u>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 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 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생 략)
- ②·③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3개월

- 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①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관하여제54조제3항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 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생략)

<신 설>

<신 설>

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 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 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 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제54조----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⑧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분 리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 로 분할할 수 없다.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 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 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 우에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

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 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 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 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 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 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 2. 선택적 기재사항 중 일부만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청구항
-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47조
 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그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 목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 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 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 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분할출원"은 "분 리출원"으로 본다.
-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 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 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 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 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 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 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리출원은 그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없다.

제53조(변경출원)	①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기간을 말한다)이지난 경우 2. (생략)
- ② ~ ⑧ (생 략)
-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 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 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 (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1
<u>3개월</u>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1. (현행과 같음)

-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 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 3. (생략)
-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u>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u>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② ~ ⑦ (생 략) <신 설>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 제 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 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2
<u>거절결정</u> , 실용신안등록거절 <u>결정</u>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을 기 초로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 장을 한 경우 그 선출원에 대
해서는 제79조에 따른 설정등 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 장이 취하된 경우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 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u>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u> <u>등록 여부의 결정</u> 또는 거절한 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3. (생략)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② (생 략)
 -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한 날, 분할출원을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한 날부터 각각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할수 있다.
 - ④·⑤ (생 략)
-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 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u>.</u>
1. (현행과 같음)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
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3. (현행과 같음)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② (현행과 같음)
3
분할
<u> 출원, 분리출원</u>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
<u> 출원을 한 날</u>
④·⑤ (현행과 같음)
제62조(특허거절결정)

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생략)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 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 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 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 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 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 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 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17에 따른 심 <u>판청구가 있는</u>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6
<u>분할출원 또는 제52조</u>
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
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
은 날부터 3개월(제79조에 따
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또는 특허거절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개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u>.</u>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u>특허거절</u>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 저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
정이 있는 경우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
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
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3. 그 특허출원이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인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④ (현행과 같음)
세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
<u>정당한 사유</u>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 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 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저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 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
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
허권의 회복 등) ①
<u>정당한 사유</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
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 1. (생략)
-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 6. (생략)

제122조(<u>질권행사</u>로 인한 특허권 저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u>질권설정</u> 이전에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제52조제2항, 제52조
의2제2항
<u>.</u>
1. (현행과 같음)
2
분할출원을 한 날 또
는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
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u></u>
3. ~ 6. (현행과 같음)
Ⅱ122조(<u>질권행사 등</u> 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
시권) 특허권자(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의 경우에는 분할청구
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u> 공유자를 말한다)</u>
질권설정 또는 특허권 공유자
의 공유물분할청구

-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 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들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u>분할출원인 경우</u>

8. (생략)

② ~ ④ (생 략)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u>3개월</u>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1. ~ 6. (현행과 같음)
7
<u>분할출원 또는 제52조</u>
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u>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u>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